

국민취업지원제도(Ⅰ)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(Ⅰ)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통지서 및 반환명령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2.01.11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(Ⅰ)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,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 제목	처분 사유	서류의 내용		
1	김○진	72.07.09	국민취업지원제도(Ⅰ)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	국민취업지원제도(Ⅰ)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	IAP수립전 개시한 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고 1차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함	부정으로 수령한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50만원 반환명령 및 납부고지서	수취인 불명	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2.01.17. ~ 2022.01.31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제주안(Tel. 051-860-29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